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 개정(‘20.4.7. 공포)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자 함(안 제44조의2 신설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5. 27. ~ 6. 18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2(국외 체류기간) 법 제7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3개월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4조의2(국외 체류기간) 법 제7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3개월을 말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18